

2015년 제1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15년 7월 27일(월요일) 15:00 ~ 17:10

○ 장소 : 본부 8층 회의실

○ 회순

1. 개회
2. 국민의례
3. 위원장 선출
4. 위원장 개회 선언
5. 안건상정
6. 폐회

○ 상정안건

1. 전북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2. 대학회계 총정원 운영안
3.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기준안
4. 2015학년도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간 사 : 지금부터 제1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습니다.
(이병학) (국민의례를 마친 후)재정위원회는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구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오늘 일정은 위원장 선출의 건 외에 안건 4건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재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TF팀 팀장을 하셨던 신양균 부총장을 임시위원장으로 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들 : 전원 동의합니다.

간 사 : 모든 위원들께서 동의하셔서 신양균 부총장님을 임시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임시
(이병학)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 기성회회계가 폐지되고 대학재정회계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내부적으로 여러 문제로
(신양균) 이제야 재정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출에 앞서서 선출되신 위원들이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앞으로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들 : 순서대로 자기소개를 함

임시위원장 : 그럼 바로 재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양균) 위원장 선출에 관한 의견이나 추천발언이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 전북대학교 발전지원재단이사장으로 계신 박병덕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 영)

임시위원장 : 박병덕 위원 추천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신양균) (위원들의 동의가 있는 후)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신 걸로 알고 위원들의 추천과 재청으로 박병덕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위원장님의 수락 인사를 듣고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제가 교수회장을 역임하고 발전지원재단 이사장의 직을 맡고 있으면서 학교
(박병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재정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심의 4건에 대해서 심의하기 이전에 위원들께서 기타안건으로 부의할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 그럼 안건 1안 「전북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박병덕)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제안 설명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 배포된 회의자료에 의거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박성일)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전북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설명함

위원장 : 전북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박병덕)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 우리대학에서 재정 및 회계운영에 관한 규정을 만들기 전에 교육부에서 각
(신양균) 대학에 공통되는 재정회계운영에 관한 규정 표준안을 대학에 배포했으며, 우리는 표준안에 의거해서 이 규정을 만들었기에 전체적인 내용은 모든 대학이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위법규에 따르자면 규정안 제7조 제8호, 제9호, 제10호로서 예비비 지출, 계속비 지출, 예산이용 부분은 재정위원회 의 결사항이 아니라 총장의 권한사항입니다. 따라서 규정안 제7조 제8호, 제9호, 제10호는 삭제하고 제11호를 제8호로 올리는 것을 제안합니다.

재무과장 : 신양균 위원의 말씀대로 예비비 지출, 계속비 지출, 예산 이용 부분은 총장의
(박성일) 권한이기에 삭제하고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 원 : 제정안에 대해 교육부에서 표준안을 보내왔다고 했는데, 재정위원회에서 삭제하는
(송영남) 것보다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수정을 하는 것은 어떤지 의견을 개진합니다.

위 원 : 규정안 제7조 제2호를 살펴보면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신양균) 예산, 결산 부분은 재정위원회 심의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건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절차상 규정안 제7조 제8호, 제9호, 제10호는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박병덕) 데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 전북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제7조 제8호, 제9호,
(김 영) 제10호를 삭제하고 제11호를 제8호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유인물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위원들 :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합니다.

위원장 : 안건 1안인 전북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은 김영 위원의
(박병덕) 수정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안 「대학회계직원 총정원 운영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 설명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팀장 : 대학회계직원 총정원 운영안 제안이유를 회의자료에 의거 설명함
(이정희)

위원장 : 대학회계직원 총정원 운영안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덕)

위 원 : 재정위원회에서 세출예산안도 심의를 하겠지만 제출된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송영남) 인적경비가 많이 축소되었는데, 운영안은 현재보다 2명을 증원해서 요청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사팀장 : 추가인력으로 요청한 2가지 업무 중 개인정보관리는 모든 부처에서 굉장히
(이정희) 중요한 업무로서 인력이 필요하고 특성화캠퍼스 보건담당은 익산대학과 통폐합
후 보건진료소 개소로 인한 전문인력이 필요함으로 상정을 요청드린 겁니다.

위 원 : 인적경비 예산은 줄어드는데, 인원은 늘어나게 되는 부분을 질의한 겁니다.
(송영남)

재무과장 : 인적경비 부분은 인력충원과 별도로 퇴직급여가 25억원 정도 삭감되어서 예산이
(박성일) 줄었습니다.

위원장 : 송영남 위원은 2명의 추가정원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질문하시는
(박병덕) 것 같은데 답변이 되셨습니까?

위 원 : 네
(송영남)

위 원 : 총정원에 특수조교가 있는데 특수조교는 국비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지 설명을
(유철중) 요청합니다.

인사팀장 : 특수조교는 국비에서 모든 재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교인력이 많이
(이정희) 부족하고 행정조교 인력은 향후 조정할 수 있다는 예측으로 인해 대학회계
총정원에서라도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같이 올렸습니다.

위원장 :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제2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려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병덕) 원안에 대해 동의를 요청합니다.

위원들 : 동의합니다.

위원장 : 안건 2안 대학회계 총정원 운영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박병덕) 안건 3안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본부 배포된 회의자료에 의거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 등 관련
부분부장 : 법령에 따라 교직원에게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안을 마련할 필요가
(최용재) 있음을 설명함

위원장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박병덕)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 조교를 포함한 교직원 지급안이 마련 중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구종남) 설명을 요청합니다.

재무과장 : 예산은 다음안건에서 설명해야 하는데 예산은 교원과 직원 구분 없이 교직원으로 (박성일) 해서 영역별로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 원 : 직원은 교육·연구 부분은 해당하지 않아서 지급할 근거가 없을 것 같은데 (송영남) 지급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본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규칙에 의거 관련 (최용재) 부분부장 :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 원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로 지급기준이 되어 있는데 교육·연구는 교원의 (송영남) 고유영역으로 직원은 해당되지 않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직원들에게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를 지급하려면 다른 명목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 원 : 직원들의 경우 교육영역은 해당이 없지만 연구영역은 예전부터 행정발전연구, (권덕창) 대학혁신연구 등을 진행하던 전례도 있습니다.

위원장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기준안을 통과시키고 직원에 대해서는 따로 (박병덕) 지급기준안을 만들어서 재정위원회에 안을 상정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본부 교원에 대한 지급안은 오늘 심의·의결할 수 있고요 추후에 직원과 조교에 대한 (최용재) 부분부장 : 지급안이 별도 마련이 되면 재정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지급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 예산은 이미 교원, 직원부분까지 책정이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지급기준안은 (박병덕) 나중에 만들어서 다시 통과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위 원 : 제3안은 조교 및 직원에 대한 교육연구 학생지도비 지급기준안이 마련되지 (송영남) 않은 상황이므로 통과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 원 : 오늘 안건에서는 교원에 대해서만 심의하고 직원, 조교는 추후에 별도로 심의
(이민호) 한다는 겁니다.

재무과장 : 예산편성은 교원과 직원의 구분이 없습니다. 다만 교직원으로 영역별로 지급단가를
(박성일)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안을 편성할 때 전체를 편성하느냐 일부분을
편성하느냐의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도 안건이 심의되지
않으면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 원 : 안건 3안에서 다루는 것은 교원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기준안에
(송영남) 관한 것이고 직원의 경우는 추후에 따로 심의를 한다는 것이죠?

기획조정본부 네

부분부장 :
(최용재)

위 원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에 관한 지급기준안과 관련하여 교원과 직원, 조교의
(구종남) 예산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본부 네

부분부장 :
(최용재)

재무과장 : 안건 3안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 것이고
(박성일) 예산은 안건 4안에서 상정될 부분으로 예산과 지급안은 완전 별개입니다.

위 원 : 그런데 지급기준도 없이 예산을 심의할 수 있습니까?
(송영남)

재무과장 : 절차상으로는 안건 2안 정원도 같이 심의할 수 없는 것이 총정원을 확보하고
(박성일)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재정위원회의 소집이 늦어져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위 원 : 예산안에서 직원, 조교부분을 책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기준안이 만들어지더라도
(신양균)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 수당을 받았을 당시의
기준으로 예산액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급기준안이 마련이 되고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지급을 하는 겁니다. 예산안은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를 만들어 책정을 해놔야 한다는 겁니다.

위 원 : 지금까지 기성회회계에서 받았던 급여보조성 경비는 정교수 기준 일천칠백만원정도 (구종남) 지급되었고, 그 금액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교직원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위 원 : 이 부분은 나중에 안건 4안 예산안 심의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신양균)

위원장 : 안건 3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응답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의문사항이나 (박병덕)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안에서 직원과 조교의 지급안이 학교에 제출 (권덕창) 됐을 때 10일안에 재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해주시고, 지출을 해주셨으면 한다는 것을 보장한다면 교원들의 지급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위 원 : 제안 설명자가 안건3안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안중에 수정해야 할 부분이 (송영남) 있다고 했었는데 어느 부분의 수정이 필요합니까?

기획조정본부 회의자료에서 원래 지급안에 따르면 차등지급을 하고 삭감하는 방식을 택하여 금액이 (최용재) 부분부장 : 남게 됩니다. 이 경우 다시 평가를 해서 영역별 상위 10% 교원에게 남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이었는데 교육부와 협의 끝에 예산소진의 의도처럼 해석이 되어 법령 위배 소지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부분은 삭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대안으로는 내년 2월이 지급시기이므로 다른 의견을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위 원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안에서 20%를 차등지급하는데 실제적으로 최고등급과 (송영남) 최하위등급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본부 일천칠백만원 기준으로 20%면 삼백사십만원인데요. 산술적으로 아무런 자료를 (최용재) 부분부장 : 제출하지 않았을 때 삼백사십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예상합니다.
(최용재)

위원장 : 많은 시간이 흘러서 정리가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박병덕) 안건 제 3안 교육·연구비 및 학생지도비 지급기준안 중 차등방식 비용지급 후 삭감액은 영역별 상위 10% 교원에게 지급한다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유인물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수정안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위 원 : 그 부분과 별개로 직원과 조교에 대해 지급 기준안이 본부에 제출됐을 때 10일 (권덕창) 이내에 재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의결해주시고, 지급한다는 것을 회의록에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재정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협조해서 협의를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만
(박병덕) 지급보증을 한다는 의결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 원 : 네. 회의록에 명기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권덕창)

위원장 : 그럼 이제 안건 제 3안에 대해서 7번 차등방식 중에서 두 지표 평가에 대해
(박병덕) 삭제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 원 : 학생 지도비 기준안은 유인물 원안에서 제6쪽 제7 차등방식안 중에서 밑줄친
(김 영) 부분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들 : 재청합니다.

위원장 : 안건 3안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안은 김영 위원의 수정안대로 통과되었음을
(박병덕)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 4안 「2015학년도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세입·세출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 설명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 2015년도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회의자료에 의거
(박성일) 자세하게 설명함

위원장 : 2015년도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박병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 대학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총칙 7조에 공무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송영남)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재무과장 : 현재 공무원인건비가 대학회계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나중에 교육부에서
(박성일) 공무원인건비를 대학회계에 편성할 수 있어, 그 부분을 추가할 수 있도록 삽입
했습니다.

위 원 : 제7조에 당해 소관 항간에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느 항목에도
(송영남)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 예산총칙상 7조 중 1번에서 7번까지만 집행할 수 있고 다른 부분에는 집행할
(박성일) 수 없습니다.

위원장 : 예산편성안을 살펴보면 취업활성화 항목이 7억여원에서 1억9천만원 정도로
(박병덕)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는데요. 요즘 각 대학이 학생들의 취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학생취업지원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 원 : 학생취업지원처장을 맡고 있는 저는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이
(김성주) 와도 부족한데 삭감이 되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태입니다.

위원장 : 예산안 개요를 살펴보면 국가지원금 예산이 32억원 정도가 국고보조금 신규
(박병덕) 사업 미확정으로 삭감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시 국가지원금이 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 현재 교육부에서 일반회계 예산은 편성하고,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성일)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배정될 것입니다.

위원장 : 지금 현재 예산안도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된 상태이므로 나중에 필요한 경우를
(박병덕) 대비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서 교직원 후생복지, 학생 취업 등에 추경할 수 있도록 원칙을 정해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 수입대체경비 및 등록금의 국고 납입됐던 금액에 대한 기준을 확정하지 못해서
(박성일) 그 부분까지 고려하면 올해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한번 정도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 원 : 예산안을 살펴보면 인적경비 중 복리후생비가 36억원에서 11억으로 줄었는데
(송영남) 어떤 항목이 삭감이 된 겁니까?

재무과장 : 퇴직급여 부분입니다.
(박성일)

위 원 : 우리대학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되었는데 운영비 예산 부분을 살펴보면
(송영남) 265억원에서 285억으로 20억원정도 증가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 2014년도와 비교했을 때 총액은 맞지만 세부사업명에서 다른 부분이 있고
(박성일) 과목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 혹시 더 질의하신 내용 있으시면 질의 바랍니다.
(박병덕)

위 원 : 현재 우리대학 대학원생의 총정원이 학부생의 15%정도인데 대학원 총학생회 (오영준) 조직이 없어서 예산편성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추경 또는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 원 : 대학원 학생회를 지금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운영과 관련해서 (신양균) 별도로 항목을 추가하지는 않았지만 대학원 전체 운영비 중에 일부는 그 몫으로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추후에는 대학원 총학생회 예산으로 반영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 원 : 학부 및 대학원의 실험실습비 지원이 작년 대비 동결인데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송영남) 생각합니다. 실험실습비가 너무 없어서 실제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불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이 어렵다면 추경예산 편성시라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 인건비, 공공요금 등이 인상되고 등록금은 몇 년 동안 동결 및 인하를 거듭하여 (박성일) 원칙적으로 예산이 줄다보니 2015년도 예산에서 실험실습비를 동결했습니다. 사무국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 혹시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 바랍니다. (박병덕)

위 원 : 2015년도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유인물 원안대로 통과할 (김 영)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들 : 재청합니다.

위원장 : 안건 4안 2015년도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박병덕) 통과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재정위원회 규정에 의거 출석위원 3인을 호선해서 회의록에 대표로 간서명 할 수 있으므로 위원분들이 동의해주시면 대표자 3인을 선출해서 간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위원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 대학 내에 상주하시는 분들이 서명을 해야 업무진행도 편리할 수 있으므로 (김 영) 제가 구종남 위원, 송영남 위원, 변재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 원 : 저보다는 공직협 회장을 맡고 계신 권덕창 위원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변재욱)

위 원 : 다음 주에는 저도 교내에 부재중이어서 서명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송영남)

위 원 : 그러면 구종남 위원, 권덕창 위원, 변재욱 위원 이렇게 세분을 추천합니다.
(김 영)

위원들 : 동의합니다.

위원장 : 회의록에 간서명 하는 위원으로 구종남 위원, 권덕창 위원, 변재욱 위원이
(박병덕)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박병덕, 신양균, 유철중, 김성주, 이민호, 윤명숙, 구종남, 송영남, 권덕창,
(12명) 변재욱, 오영준, 김 영

출 석 최용재(기획조정본부), 박성일(재무과장), 이정희(총무과)
교직원
(3명)

기록자 간사 이병학, 손대섭

위 원 장 : 박 병 덕 (인) 

간 사 : 이 병 학 (인) 

기 록 자 : 손 대 섭 